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6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4.
- (3) 회 부 일 : 2025. 3.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2항 후단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립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계획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생략)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u>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짐¹⁾.
- 마약류 범죄는 그 전과 속도가 빠르고 범죄의 수법이 다양하며 신종 마약류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마약류 관련 대책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²⁾.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 대응이 필요한 마약류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국무조정실) 현행법에 따라 중장기(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마약류 범죄 양상 및 이용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등의 사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4

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 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통계법」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